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45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김동아・박정현・김영호

민형배 • 이병진 • 고민정

박희승 · 김남근 · 전현희

김문수 · 김용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1호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은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의 예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공동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현행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임

이에 현행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법률 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사업을"을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사업"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제3호"로 한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 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 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①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 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 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사업(이 하 이 조에서 "공동사업"이라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하다)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 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한하는 경우로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신 설>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 <신 설>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제1</u> <u>항 단서</u>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 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 할 수 있다.

회의	시장	-점유	율의	합계가	10
0분의	50	이상	인 경	경우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 함한다)을 거래상대방으로 하 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소비자(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사 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이 익을 침해하는 경우

② <u>제1</u>
항제3호
<u>.</u>